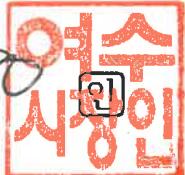


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관리
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4 월 8 일

여 수 시 장

2024. 4. 8.



여수시 조례 제2062호

붙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62호

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중 각 목의 사업

가.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

나.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

다. 관광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. 다만, 사전에

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설립 및 사업)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p> <p>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공영주차장(여수시청 부설주차장 포함) 관리 및 운영 사업 나.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사업 다. 종량제 봉투 및 배출 스티커 판매 사업 라.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 마.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<p>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설립 및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중 각 목의 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나.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다. 관광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<p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. 다만, 사전에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적용한다</p>	